

1. 개정이유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으로 전세버스 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규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궤도차량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별표1 제1호 바목 신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궤도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용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궤도시설의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별표1 제2호 서목 신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궤도차량 및 삭도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궤도시설 승강장의 바닥 기울기,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차량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 추락방지용 난간, 점형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다.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 신설(제4조의4 및 별표3 신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록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보호장치,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1 제1호나목6)가)부터 다)까지 및 같은 호 마목6)가)부터 다)까지 중
“장애인전용화장실”을 각각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
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가) 중 “주”를 각각 “교통약자가 통행 가능한”으
로 하며, 같은 목 4) 나) 중 “주 출입문이”를 “교통약자가 통행 가능한 출입구
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궤도차량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열차 운행 장애 및 재난상황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
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다만, 목적지가 단일로서 분명하고, 정
류장·지주 등을 통해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문의 개폐방향, 열차 운행 장애 및 재난상황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전면 윗부분,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가 단일로서 분명하고, 별도의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목적지 표시

가) 차량의 목적지는 차량 외부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가 단일로서 분명한 경우에는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목적지 표시는 밤에도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만 설치된 궤도의 경우 교통약자용 좌석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편도당 1곳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을 확

보하여야 하며, 탑승 중 휠체어가 밀릴 위험이 있는 경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여야 한다. 다만, 8인승 미만의 궤도차량(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손잡이

가) 차량 내부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접근가능표시

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 및 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출입구 통로

가) 출입구의 통로는 0.9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 궤도시설의 승강장

1)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이상 0.9미터 이내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

이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교통약자가 탑승 가능한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장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에 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 6) 자동순환식 삭도의 경우, 교통약자 탑승 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늦춰야 한다.
- 7)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삭도의 경우 별도의 승하차 안내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끝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울타리,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9) 승강장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안내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0) 교통약자가 휠체어에서 내려 차량을 탑승해야 하거나 차량에 탑승 가능한 별도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11) 승강장이 교통약자가 통행 가능한 출입구와 다른 층에 위치한 경우 교통약자가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 승강기 및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사로, 승강기 및 계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2호마목, 바목 및 아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신 설>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의4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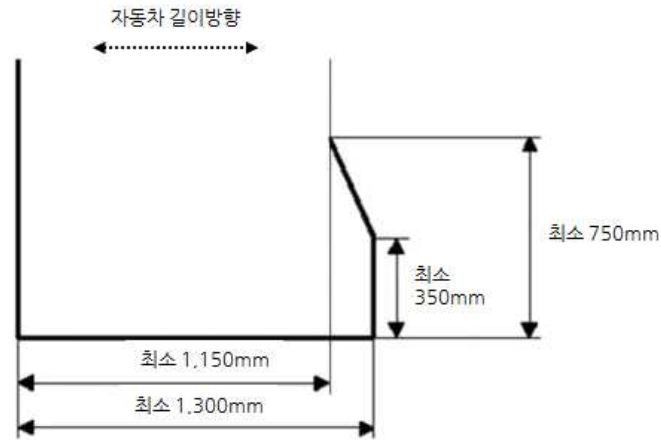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승강장치 등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설치기준

가. 휠체어 탑승공간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휠체어는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고, 자동차 내에서 앞보기로 착석할 수 있어야 한다.
- 2) 최소 750mm×1,300mm 면적을 가지는 수평면($\pm 4.5^\circ$)이어야 한다.
- 3) [그림 1]의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는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등 휠체어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그림 1] 휠체어 탑승공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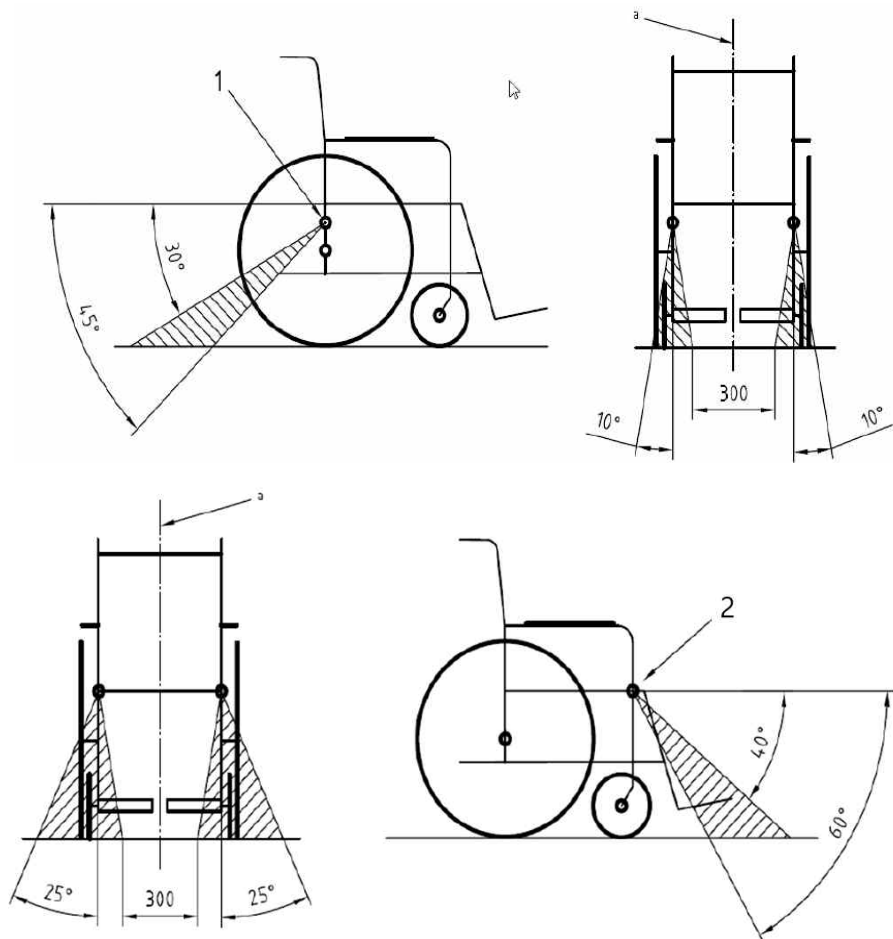
나.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구는 높이 1,400mm, 폭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휠체어 고정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만족하는 4점식 스트랩식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 3) 휠체어 고정장치는 휠체어에 설치하였을 때 다음의 가) 또는 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 휠체어 고정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

나) KS P ISO 10542-1 표준에 규정된 설치위치

- (1) 후방 고정 스트랩의 측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 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30^{\circ} \sim 45^{\circ}$ 이내이어야 한다.
- (2) 전방 고정 스트랩의 측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 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40^{\circ} \sim 60^{\circ}$ 이내이어야 한다.
- (3) 후방 고정 스트랩의 후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기준면과 평행하고, 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pm 10^{\circ}$ 이내이어야 한다.
- (4) 전방 고정 스트랩의 전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기준면과 평행하고, 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pm 25^{\circ}$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림 2]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범위(KS P ISO 10542-1)

라.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및 그 부착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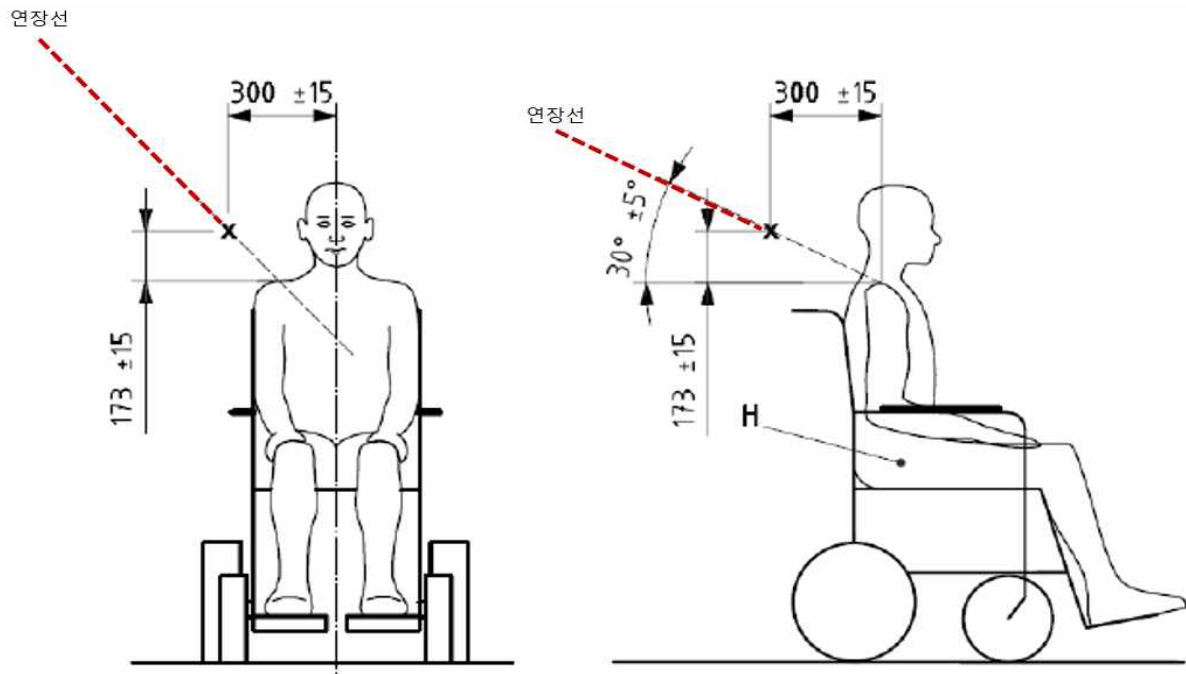
- 1)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만족하는 2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의 부착장치는 다음의 가) 또는 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

나) KS P ISO 10542-1 표준에 규정된 설치위치

- (1) 골반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위치는 휠체어에 착석한 인체모형이 착용했을 때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 착석기준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의 수평방향 하단으로 $30^{\circ} \sim 75^{\circ}$ 이내이어야 한다.
- (2) 어깨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위치는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에서 1,100m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휠체어에 착석한 인체모형의 어깨보다 $300\text{mm} \pm 15\text{mm}$ 만큼 뒤, $173\text{mm} \pm 15\text{mm}$ 만큼 위에 있으며, 부착장치와 인체모형의 어깨는 $30^{\circ} \pm 5^{\circ}$ 의 측면투영각을 가지고, 인체모형 중심선

에서 $300\text{mm} \pm 15\text{mm}$ 만큼 측방에 있어야 한다. 다만, 차량의 구조상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체모형의 어깨와 어깨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연장선상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그림 3] 휠체어 탑승객 구속장치 설치범위(KS P ISO 10542-1)

마. 휠체어 승강장치는 다음의 설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휠체어 승강장치 바닥면의 크기는 길이 1,200mm, 폭 800mm 이상일 것
- 2) 휠체어 승강장치는 시각 및 청각 경고장치를 설치 할 것
- 3) 휠체어 승강장치는 구름방지장치를 설치 할 것
- 4) 휠체어 승강장치는 난간을 설치하여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 할 것
- 5) 휠체어 승강장치의 사용자 설명서를 승강장치 주위에 설치 할 것
- 6) 휠체어 전동 승강장치의 조종장치는 휠체어 승강장치 주위에 있어야 하고, 휠체어 전동 승강장치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전원장치는 운전석 주위에 설치 할 것.
- 7) 휠체어 전동 승강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조종장치의 조작을 중단하면 즉시 작동이 멈춰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도 작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3과 같다.</u>